

대전광역시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321
----------	-----

제출연월일 : 2008. 5. 7.
제출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조례에서 인용한 「수질환경보전법」 및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일치되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관련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내지 제3조 및 제13조 등).
-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이 신설됨에 따라 부담금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 제24조의2 및 제25조의2 등).
- 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자도 배수설비 공사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라. 관련법 개정에 따라 ‘오염물질’을 ‘수질오염물질’로 용어를 정비함(안 제13조 및 제1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의 : 해당없음
- 라.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 · 폐지 등 없음
- (3) 입법예고 : 2008. 3. 21. ~ 4. 9.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대전제3 · 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대전제3 · 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대전제3 · 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를 “대전제3 · 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전제3 · 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대전 제3 · 4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을 “대전제3 · 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제2호중 “수질 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제6호중 “및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이하 “협의기준부담금”이라 한다)”을 “,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이하 “협의기준부담금”이라 한다) 및 오염총량 초과부과금(이하 “총량부과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제2항”을 “법 제49조제3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 · 하수

도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내용이 경미하다고 사업시행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 제목 “(수세식변소의 설치)”를 “(수세식 화장실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중 “변소를”을 “화장실을”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처리장의 처리대상 수질오염물질) 처리장의 처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수질오염물질을 말한다. 다만,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농도 기준은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배출기준에 의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폐수배출사업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장의 처리대상 수질오염물을 제외한 나머지 수질오염물질을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 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중 “오염물질”을 “수질오염물질”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5”를 “법 제32조제8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사업소장은 폐수종말처리장”을 “수탁자는 처리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중 “오염물질”을 “수질오염물질”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수도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면제 대상이 되는 자

제17조제2항중 “시설설치비부담금을”을 “시설설치비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적립금의 관리)”를 “(시설재투자적립금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23조제2항중 “적립금”을 각각 “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위임”을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중 “통보토록”을

“통보하여야”로 한다.

제5장 제목 “유지관리비와 기본부과금 및 협의기준부담금의 부담”을 “유지 관리비와 기본부과금, 협의기준부담금 및 총량부과금의 부담”으로 한다.

제24조의2의 제목 “(기본부과금 및 협의기준부담금의 부담)”을 “(기본부과 금, 협의기준부담금 및 총량부과금의 부담)”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기본부과금”을 “기본부과금, 협의기준 부담금 및 총량부과금”으로 한다.

제24조의2제2항 중 “기본부과금 및 협의기준부담금”을 “기본부과금, 협의기 준부담금 및 총량부과금”으로 한다.

제25조제3항중 “유입처리 부담금은”을 “유입처리에 따른 유지관리비는”으 로 한다.

제25조의2의 제목 “(기본부과금 및 협의기준부담금의 부과방법)”을 “(기본 부과금, 협의기준부담금 및 총량부과금의 부과방법)”으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기본부과금 및 협의기준부담금”을 “기본부과금, 협의기 준부담금 및 총량부과금”으로 한다.

제25조의2제2항 중 “기본부과금”을 각각 “기본부과금, 협의기준부담금 및 총량부과금”으로 한다.

제25조의2제3항 중 “부담금”을 “기본부과금, 협의기준부담금 및 총량부과 금”으로 한다.

제25조의2제4항을 삭제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시설설치비, 유지관리비, 시설재투자적립 금”을 “부담금”으로 한다.

제27조제4항 중 “유지관리비등”을 “부담금을”로 한다.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이 조례에 의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납기

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29조제2항을 삭제 한다.

제34조제1항중 “시설설치비, 시설재투자적립금, 유지관리비, 기본부과금 및 협의기준부담금”을 “부담금”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1호서식 및 별지 제8호, 제9호서식 “비용부담 조례”를 각각 “「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대전광역시 대전 제3·4산업단지 폐수종 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및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2 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 제3·4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의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시행자” 라 함은 <u>대전 제3·4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을 관장하는 대전광역시장을</u> 말한다. 2. “수탁자” 라 함은 <u>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의</u> 규정에 의거 사업시 행자로부터 위탁받은 운영관리 책 임자를 말한다. 3. ~ 5. (생략) 6. “부담금”이라 함은 원인자가 부담하 여야 할 처리장 시설설치비, 시설재투자 적립금, 유지관리비, 기본배출부과금(이 하 “기본부과금”이라 한다) 및 협의기준 초과부담금(이하 “협의기준부담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7. (생략) 	<p>대전 제3·4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전 제3·4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u>대전 제3·4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하 “처리장” 이라 한다)</u>----- 2.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 ----- 3. ~ 5. (현행과 같음) 6. ----- ----- ----- ----- -----, <u>협의기준초과부담 금(이하 “협의기준부담금”이라 한다) 및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이하 “총량부과금” 이라 한다)</u>----- 7.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3조(처리구역) 처리장의 처리구역은 <u>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u>	제3조(처리구역)----- <u>법 제49조제3항-----</u> ----- -----
제7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① (생략) ② <u>제1항의 공사시공은 건설사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 라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내용이 경미하여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가 공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사업시행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 ③ (생략)	제7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내용이 경미하다고 사업시행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u>수세식변소의 설치</u>) 사업자는 사업장의 <u>변소를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u>	제11조(<u>수세식 화장실의 설치</u>) ----- ----- <u>화장실을</u> ----- -----
제12조(처리장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u>수질환경보전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장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오염물질을 말한다. 다만,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농도 기준은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배출기준에 의한다.</u>	제12조(처리장의 처리대상 수질오염물질) 처리장의 처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수질오염물질을 말한다. 다만,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농도 기준은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배출기준에 의한다.
제13조(배출기준) ① <u>폐수배출사업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장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u>	제13조(배출기준) ① <u>폐수배출사업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장의 처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u>

현 행	개 정 안
<p>은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자체 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p> <p>②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장의 처리 대상 <u>오염물질</u>의 배출기준은 <u>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5</u>의 규정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한다.</p> <p>제15조(자료의 제출명령 등) ①<u>사업소장은 폐수종말처리장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케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u></p> <p>②<u>사업자는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년도의 월별 용수사용량, 제품생산량, 폐수량과 그 <u>오염물질</u> 배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수질오염물질을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 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p> <p>②----- -----<u>수질오염물질</u>----- <u>법 제32조제8항</u>----- ----- -----</p>
<p>제16조(시설설치비의 부담) ① (생략) 1. (생략) 2. <u>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 설치면제대상이 되는 자와 동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조 설치면제 대상이 되는 자</u> ② (생략)</p> <p>제17조(시설설치비의 부과방법) ① (생략)</p>	<p>제15조(자료의 제출명령 등) ①<u>수탁자는 처리장</u> ----- ----- ----- ----- ----- ----- ②----- ----- -----<u>수질오염물질</u>----- -----</p> <p>제16조(시설설치비의 부담)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하수도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면제 대상이 되는 자 ② (현행과 같음)</p> <p>제17조(시설설치비의 부과방법) ①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② 시설설치비 납부대상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비부담금을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p> <p>제22조(적립금의 관리) ① 사업시행자는 제21조제1항에 의거 부과방법 및 절차를 위임하였을 경우 적립금에 대한 관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 서류를 검사 및 통보를 받아야 한다.</p> <p>② 적립금 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수탁자에게 보증 또는 보증보험서를 징구할 수 있다.</p> <p>③ 제19조에 규정한 사유 발생시 수탁자는 사업시행자의 승인을 득하여 적립금 사용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시설재투자 완료 월까지 통보토록 한다.</p>	<p>②----- -----<u>시설설치비</u>를----- -----</p> <p>제22조(시설재투자적립금의 관리) ①----- ----- ----- <u>위탁</u>-----<u>시설재투자적립금</u>----- ----- ----- -----</p> <p>② <u>시설재투자적립금</u>----- ----- -----</p> <p>③----- -----<u>시설재투자적립금</u>----- ----- ----- <u>통보하여야</u>-----</p>
<p>제23조(납부의무 중단 및 출자지분의 양도 양수) ① (생략)</p> <p>②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조업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를 경유 사업시행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신고자의 적립금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자동상실되며 출자지분은 반환하지 아니한다.</p>	<p>제23조(납부의무 중단 및 출자지분의 양도양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시설재투자적립금</u>----- -----</p>
<p>제5장 유지관리비와 기본부과금 및 협의기준부담금의 부담</p> <p>제24조의2(기본부과금 및 협의기준부과금의 부담) ① <u>기본부과금</u>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p>	<p>제5장 <u>유지관리비와 기본부과금, 협의기준부담금 및 총량부과금의 부담</u></p> <p>제24조의2(<u>기본부과금, 협의기준부담금 및 총량부과금의 부담</u>) ① <u>기본부과금, 협의기준부담금 및 총량부과금</u> -----</p>
<p>1. ~ 3. (생략)</p>	<p>1. ~ 3.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u>기본부과금</u> 및 협의기준부담금은 관리기관이 원인을 분석한 후 사업자대표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환경청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u>기본부과금</u>, <u>협의기준부담금</u> 및 <u>총량부과금</u>----- ----- ----- -----</p>
<p>제25조(유지관리비의 부과방법) ① ~ ② (생략) ③ 공단외 지역의 생활하수 <u>유입처리</u> 부담금은 별도 조치에 따른다.</p>	<p>제25조(유지관리비의 부과방법) ① ~ ②(현행과 같음) ③-----<u>유입처리</u>에 따른 <u>유지관리비</u>는-----</p>
<p>제25조의2(<u>기본부과금</u> 및 <u>협의기준부담금</u>의 부과방법) ① <u>기본부과금</u> 및 <u>협의기준부담금</u>의 부과 방법은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25조의2(<u>기본부과금</u>, <u>협의기준부담금</u> 및 <u>총량부과금</u>의 부과방법) ① <u>기본부과금</u>, <u>협의기준부담금</u> 및 <u>총량부과금</u>----- -----</p>
<p>② 수탁자는 징수유예 요청 등으로 <u>기본부과금</u>을 기한내에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u>기본부과금</u>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 선납할 수 있다.</p>	<p>②----- <u>기본부과금</u>, <u>협의기준부담금</u> 및 <u>총량부과금</u>-----<u>기본부과금</u>, <u>협의기준부담금</u> 및 <u>총량부과금</u>----- -----</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u>부담금</u>을 징수유예 또는 분할고지한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징수유예기간은 기간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③-----<u>기본부과금</u>, <u>협의기준부담금</u> 및 <u>총량부과금</u>----- ----- -----</p>
<p>④ 사업시행자는 유지관리비등 특별히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그 비용을 가감하여 징수할 수 있다.</p>	<p><삭제></p>
<p>제27조(부담금의 징수유예 등)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u>시설설치비</u>, <u>유지관리비</u>, <u>시설재투자적립금</u>을 기한내 납부할 수 없다고</p>	<p>제27조(부담금의 징수유예 등) ①----- ----- -----<u>부담금</u>----- -----</p>

현 행	개 정 안
<p>인정하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부담금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1월분에 대한 징수유예 기간은 6월, 분할징수 기간은 12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 대상 부담금은 6월분을 초과하지 못한다.</p> <p>1. ~ 4. (생략) ② ~ ③ (생략) ④사업시행자는 <u>유지관리비등</u> 특별히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그 비용을 가감하여 징수할 수 있다.</p>	<p>-----</p> <p>-----</p> <p>-----</p> <p>-----</p> <p>-----</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부담금을-----</p> <p>-----</p> <p>-----</p>
<p>제28조(이의 신청) ①이 조례에 의해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납기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부과금액이 잘못 되었을 때에는 당월분 부담금은 정정할 수 없다.</p> <p>② ~ ③ (생략)</p>	<p>제28조(이의 신청) ①이 조례에 의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납기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29조(가산금) ① (생략)</p> <p>②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100분의 2의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못한다.</p>	<p>제29조(가산금) ① (현행과 같음)</p> <p><삭제></p>
<p>제34조(권리, 의무의 승계) ①시설설치비, 시설재투자적립금, 유지관리비, 기본부과금 및 협의기준부담금이 체납된 사업자가 사업장을 양도, 상속, 합병 등의 사유로 타인에게 승계하였을 경</p>	<p>제34조(권리, 의무의 승계) ①부담금--</p> <p>-----</p> <p>-----</p> <p>-----</p> <p>-----</p>

현 행	개 정 안
<p>우승계받은 사업자는 그에 따른 권리와 체납금에 대한 납부의무를 진다.</p> <p>② (생략)</p> <p>[별지 제1호서식]</p> <p><u>폐수종말처리장 유입처리(변경) 승인 신청서</u></p> <p><u>비용부담 조례</u>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종말처리장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p> <p>구비서류</p> <p>1. <u>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 각1부.</u></p> <p>2. ~ 8. (생략)</p> <p>[별지 제2호서식]</p> <p><u>폐수종말처리장 유입처리(변경) 승인서</u></p> <p><u>비용부담 조례</u>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종말처리장 유입처리를 승인 합니다.</p> <p>[별지 제3호서식]</p> <p><u>배수설비 설치(변경) 승인 신청서</u></p> <p><u>비용부담 조례</u>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p> <p>[별지 제4호서식]</p> <p><u>배수설비설치(변경)승인서</u></p> <p><u>비용부담 조례</u>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변경)을 승인 합니다.</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p>[별지 제1호서식]</p> <p><u>폐수종말처리장 유입처리(변경) 승인 신청서</u></p> <p><u>「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u> -----</p> <p>-----</p> <p>구비서류</p> <p>1. <u>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 각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u></p> <p>2. ~ 8. (현행과 같음)</p> <p>[별지 제2호서식]</p> <p><u>폐수종말처리장 유입처리(변경) 승인서</u></p> <p><u>「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u> -----</p> <p>-----</p> <p>[별지 제3호서식]</p> <p><u>배수설비 설치(변경) 승인 신청서</u></p> <p><u>「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u> -----</p> <p>-----</p> <p>[별지 제4호서식]</p> <p><u>배수설비설치(변경)승인서</u></p> <p><u>「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u> -----</p> <p>-----</p>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5호서식] 배수설비설치완료검사승인서 <u>비용부담 조례</u>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를 신청 합니다. 배수설비설치완료검사필증 <u>비용부담 조례</u>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배수설비설치완료검사승인서 <u>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u> ----- ----- 배수설비설치완료검사필증 <u>「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u> ----- -----
[별지 제6호서식] 배수설비사용개시신고서 <u>비용부담 조례</u>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사용개시를 신고합니다.	[별지 제6호서식] 배수설비사용개시신고서 <u>「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u> -----
[별지 제7호서식] 납입고지서 <u>비용부담 조례</u> 제17조에 의거 상기와 같이 공단폐수종말처리장 시설 설치 부담금을 고지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람.	[별지 제7호서식] 납입고지서 <u>「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u> ----- -----
[별지 제7-1호서식] 납입고지서 <u>비용부담 조례</u> 제21조에 의거 상기와 같이 공단폐수종말처리장 시설 재투자 적립금액을 고지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람.	[별지 제7-1호서식] 납입고지서 <u>「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u> ----- -----
[별지 제8호서식] 징수유예(분할징수)신청서 <u>비용부담 조례</u>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별지 제8호서식] 징수유예(분할징수)신청서 <u>「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u> ----- -----

관계법령

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 (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수계영향권별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수 있다. 다만,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4대강수계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지역의 경우에는 4대강수계법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오염총량규제가 실시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해양오염방지법」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의 목표기준 달성을 여부를 평가한 결과 그 기준을 달성·유지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수계의 유역에 속하는 지역
 2. 수질오염으로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험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계의 유역에 속하는 지역
-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지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7.5.17]

제4조의2 (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공고 및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이하 "오염총량관리지역"이라 한다)의 수계 이용상황 및 수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구간별로 오염총량관리의 목표가 되는 수질(이하 "오염총량목표수질"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경계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 하기

위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시·도 관할 구역 안의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공고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시·도지사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는 오염총량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5.17]

제4조의5 (시설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적용받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할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2.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3.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②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적용받는 시설로서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시설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 ③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해관계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오염할당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가동하고 그 측정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의3에 따른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7.5.17]

- 제4조의6 (초과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4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이하 "할당오염부하량등"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자에게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후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③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의 보고 및 확인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8조의4제2항·제39조·제40조·제42조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은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환경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본다.
- ④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기간 내에 이

행을 하였으나 검사 결과 할당오염부하량등을 계속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령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방지시설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더라도 할당오염부하량등 이내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폐쇄를 명령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에 관하여는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사업자"는 "오염할당사업자등"으로, "제42조"는 "제4조의6제4항"으로, "국세체납처분의 예"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로 본다.

[본조신설 2007.5.17]

제4조의7 (오염총량초과부과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할당오염부하량등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 총량초과부과금(이하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②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또는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수질 부분에 부과된 과징금에 한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④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납부·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41조제4항 내지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배출부과금"을 "오염총량초과부과금"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5.17]

- 제32조 (배출허용기준)** ①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시·도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례로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3조·제37조·제39조 및 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5.17>
-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 안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 안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고, 당해 지역 안에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도 안에 당해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 안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도 조례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5.17>
1.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2. 환경부령이 정하는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거나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 ⑧환경부장관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8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수질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안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종말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1.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및 동 공단이 동법 제17조의4의 규정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제외 한다)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준하는 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말처리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말처리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환경부장관을 제외한다. 이하 제49조의2제2항 및 제4항에서 같다)

가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말처리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3>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종말처리시설에서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이하 "공동처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공동처리구역지정을 포함한 종말처리시설의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그 사업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⑤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얻은 후 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승인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제49조의6 (강제징수) ①시행자는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자가 납부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 각 호의 자(이하 "환경관리공단등"이라 한다)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환경관리공단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탁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관리공단등은 징수된 금액 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3]

②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0과 같다

제34조 (배출허용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③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2조 (환경오염방지사업의 실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이하 "시행자"라 한다)은 환경오염이 심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 또는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기타 환경보전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오염방지사업(이하 "방지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하수도법

제34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2. 오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하수관거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3.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하수관거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하수관거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규모·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
및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 보고서

2008년 5월 28일
산업건설위원회

I. 심사 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5월 7일 대전광역시장
2. 회부일자 : 2008년 5월 8일
3. 상정일자 : 제17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8. 5. 28)상정, 심사,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미래산업본부장 이택구)

1. 제안이유

조례에서 인용한 「수질환경보전법」 및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일치되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관련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내지 제3조 및 제13조 등).
-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이 신설됨에 따라 부담금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

제24조의2 및 제25조의2 등).

- 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자도 배수설비 공사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라. 관련법 개정에 따라 ‘오염물질’을 ‘수질오염물질’로 용어를 정비함(안 제13조 및 제15조).

III.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이환구)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폐수처리장의 수선·보수를 할 수 있는 사업자를 환경관련 전문 사업자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조례안 세부내용을 보면,

- 안 제1조 내지 제3조, 제12조 및 제13조 등에서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
- 안 제2조, 제24조의2 및 제25조의2 등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오염총량초과부담금이 신설됨에 따라 부담금 관련 조문을 정비함.
- 안 제7조에서는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폐수처리장의 수선·보수를 할 수 있는 사업자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자도 가능하도록 확대함.
- 안 제11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34조에서는 용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용어의 순화 및 현실에 맞도록 정비함.

- 안 제13조 및 제15조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함.
- 안 제16조에서는 관계법령이 폐지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
- 안 제29조에서는 중가산금 조항을 정비하라는 규제 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삭제 정비함.
- 별지서식에서는 서식명칭을 제명에 맞도록 정비함.

이상과 같이 조례안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폐수 종말처리시설조항이 2007. 5.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2007. 11. 17부터 시행되고, 「환경 개선비용 부담법」에서 인용하고 있던 환경오염방지사업 비용부담금 관련조항이 2007. 1.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2007. 7. 3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도록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 제24조의2 및 제25조의2 등과 관련되는 오염총량 초과부담금 내용이 2007. 5.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신설되어 2007. 11. 17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담금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와 관련되는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폐수처리장의 수선·보수를 할 수 있는 사업자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자도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상위법령과 현실에 맞도록 인용조문 정비와 용어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상위법 개정과 행정여건이 변화되면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함에도 1993. 8. 24 조례를 제정하여 세차례에 걸친 기본적인 조례개정이후 2003. 9. 19를 끝으로 지금까지 후속 조례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바, 앞으로는 상위법령개정 등 개정사유가 발생되면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처리로 조례개정 자연에 따른 시민불편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 · 답변요지 : 생 략

V. 토 론 요 지 : 생 략

VI.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